

# 「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6. 13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6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6. 21(목) 제1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농축산과장)

-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함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설립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- 재원조성 방법과 고유사업,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 하였고
  - 업무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- 다만, 향후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지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부